

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위원 성명 공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 제2항(결산서 등의 제출)에 따라
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
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3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장



1. 검사기간 : 2018. 4. 1. ~ 2018. 4. 30.

2. 감사위원

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박 흥 옥	동작구의회 의원
위 원	오 현 석	공인회계사
위 원	이 성 진	세 무 사
위 원	전 정 현	공인회계사

3. 검사의견서 : 따로 붙임